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3. 5.

발 의 자: 이미자·김종보·김하영
여봉무·이용주·이시훈
의원

1. 제정 이유

최근 조직화·전문화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AI음성합성·번호생성 등의 기술과 융합, 피해자 심리를 통제하여 자발적으로 금융 자금을 인출·이체시키는 유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지역사회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지원(안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등

다.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안 제4조)

다. 입법예고: 2025. 12. 18. ~ 2026. 1.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